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1. 4.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개선사항 1건

나. 개선사항

(1)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통신기록 모니터링 미흡

장외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규 「●●●●●●●●●●●●●●●●●●●●」에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 모든 통신수단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토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메신저와 이메일에 대한 통신내역 상 이상거래 유무를 준법감시부의 정기 점검대상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나,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통신수단인 전화통화에 대해서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주로 활용되는 통신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신내역의 적정성을 별도 점검항목으로 설정하지 않는 등 점검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가 통제활동이 느슨한 통신수단으로 우회 실행될 소지 등 통신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활동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화통화에 대해서도 통화녹취 점검을 통해 이상거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통신수단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은행「●●●●●●●●●●●●●●●●●●●●」